ISSN 2586-0119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1호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

2017. 11.

1. 개요
2. 청소년법원의 구성과 관할
   가. 청소년법원의 구성
   나. 청소년법원의 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청소년형사절차 및 절차참여자
   가. 청소년형사절차
      (1) 수사 및 소송
      (2) 집행
      (3) 기록부등록
   나. 청소년형사절차참여자
      (1) 청소년담당판사
      (2) 청소년담당참심판사
      (3) 청소년법원부조인
4. 시사점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원문보기 안내

[국회전자문서시스템]

국회전자문서시스템→국회정보시스템→국회법률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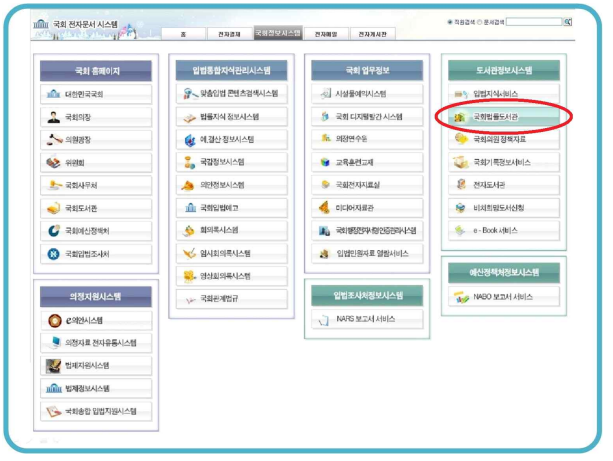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국회법률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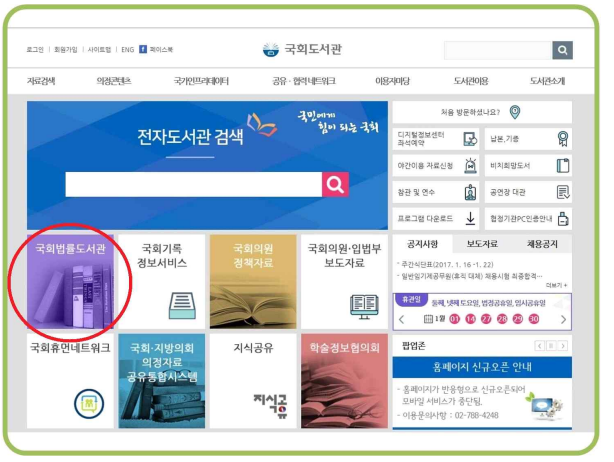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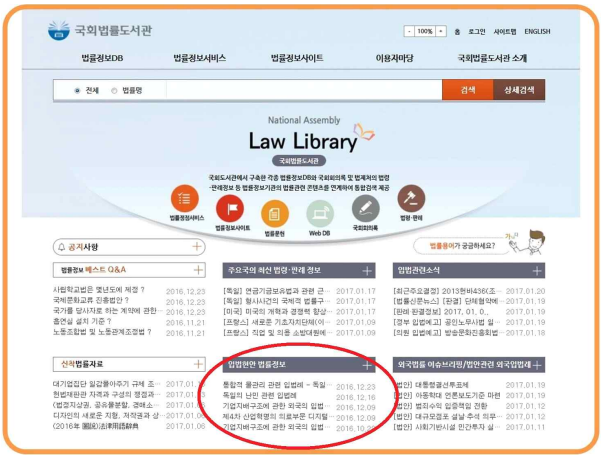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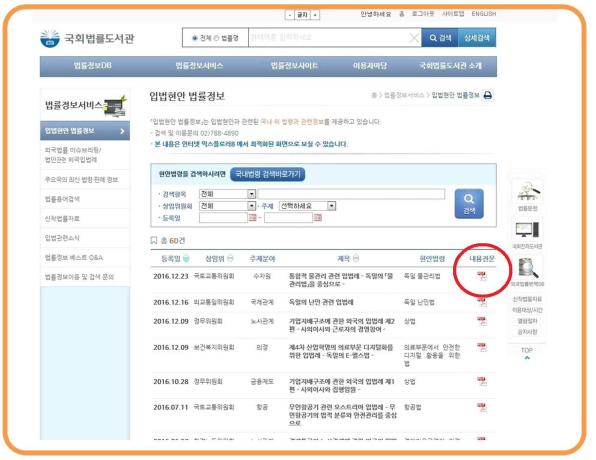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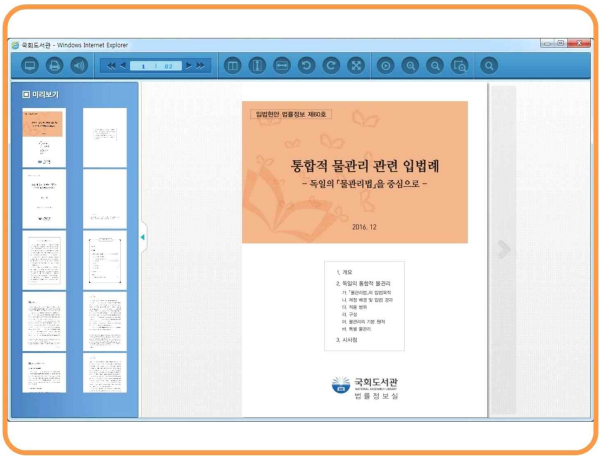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수록한 입법 참고자료입니다.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1호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

2017. 11.

작성자 :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법학박사)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Keywords〉

청소년법원법(JGG), 청소년법원, 청소년형사절차,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담당검사, 청소년법원부조, 청소년법원부조인

요 약

독일은 「청소년법원법」(JGG)에 따라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사법과는 독립된 청소년형법체계와 청소년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청소년법원 구성과 청소년형사절차 및 절차참여자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사법제도와 청소년법원조직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청소년법원은 구(區)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특별관할권을 가지는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참심재판부, 청소년합의부로 구성되며 교육처분, 훈육처분, 청소년형벌 등 동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청소년범죄를 전담한다.

청소년형사절차는 각 절차마다 일반형사절차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다양한 절차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청소년담당판사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전문성과 교육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송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집행절차에서도 형집행관리자이자 행형관리자의 역할도 담당한다. 청소년재판부에는 명예법관인 청소년담당참심판사가 남녀동수로 참여하며,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조사업무와 감독업무, 교육적 원호와 후견업무 등을 담당한다.

목 차

【요약】

1. 개요 ····· 1

2. 청소년법원의 구성과 관할 ····· 4

가. 청소년법원의 구성 ····· 4

나. 청소년법원의 관할 ····· 5

(1) 사물관할 ····· 5

(2) 토지관할 ····· 7

3. 청소년형사절차 및 절차참여자 ····· 8

가. 청소년형사절차 ····· 8

(1) 수사 및 소송 ····· 8

(2) 집행 ····· 11

(3) 기록부등록 ····· 13

나. 청소년형사절차참여자 ····· 16

(1) 청소년담당판사 ····· 17

(2) 청소년담당참심판사 ····· 19

(3) 청소년법원부조인 ····· 21

4. 시사점 ····· 26

1. 개요

입법현안 법률정보(제69호)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에서 독일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청소년법원법」(JGG)[1]에 따라 교육처분, 훈육처분, 청소년형벌의 3가지 유형으로 청소년형법제재를 체계화하였다.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에서는 독일 청소년형법제재의 절차적 측면으로서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에 관하여 검토한다. 독일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법원법」은 일반법인 「형법」(StGB)[2] 및 「형사소송법」(StPO)[3]의 특별법으로서 청소년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법원법」은 일반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교육사상을 기초로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4],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제정: 1953. 8. 4., 최종 개정: 2017. 8. 27. BGBl. I S. 3295) http://www.gesetze-im-internet.de/jgg/JGG.pdf
※ 번역문: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 DB

2) 「형법」(Strafgesetzbuch: StGB, 제정: 1871. 5. 15., 최종 개정: 2017. 9. 30. BGBl. I S. 3532)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StGB.pdf

3)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StPO, 제정: 1950. 9. 12., 최종 개정: 2017. 8. 27. BGBl. I S. 3295) http://www.gesetze-im-internet.de/stpo/StPO.pdf

독립된 청소년법원은 두고 있지 않으며,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이고,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고,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5] 검사선의주의[6]에 따라 검사는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7]

현재 제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다수인데 그 중 절차법적 내용을 보면, ①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8], ②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는 법안[9], ③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석방을 어렵게 하고, 사형 및 무기형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 전과기록을 남게 하는 법안[10], 현행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11],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4) 「소년법」 제1조
5) 「소년법」 제3조
6) 지난 Ⅰ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형식적 기소절차를 통해서 청소년법원에 회부하고, 청소년법원은 회부된 청소년 사건을 심리한 후 교육처분, 훈육처분, 청소년형벌이라는 3가지 유형의 형사제재를 부과함. 이 때 제재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되므로 선의권 내지 검사선의주의는 문제되지 않음.
7) 「소년법」 제49조
8) 의안번호: 2009812,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
9) 의안번호: 2009212, 이석현의원 등 27인 발의
10) 의안번호: 2009192, 김도흡의원 등 11인 발의
11) 의안번호: 2008275, 김상희의원 등 13인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12] 등이다.

이 글에서는 독립된 청소년형법체계와 청소년형사절차를 갖추고, 「청소년법원법」에 따라 청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에서 청소년법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관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청소년형사절차와 청소년형사절차참여자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사법제도와 청소년법원조직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로 한다.

12) 의안번호: 2007331, 오신환의원 등 13인

2. 청소년법원의 구성과 관할

가. 청소년법원의 구성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대해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일반형사법원이 아닌 특별 "청소년법원"이 결정을 내린다.[13] 청소년법원은 구(區)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특별관할권을 가지는 재판부인, ① 청소년담당판사[14], ② 청소년참심재판부[15], ③ 청소년합의부[16]로 구성된다.[17]

청소년담당판사는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반해, 청소년참심재판부는 의장인 청소년담당판사 1명과 2명의 청소년담당참심판사로 구성된다.[18] 모든 공판에서 청소년담당참심판사는 남성과 여성 각 1인이 담당하고, 공판과정 이외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9]

청소년합의부는 청소년대합의부와 청소년소합의부로 구분되는데, 청소년대합의부는 의장을 포함한 3명의 판사와 2명의 청소년담당참심판사로 구성되고, 청소년소합의부는 의장과 2명의 청소년담당참심판사(청소년소합의부)로 구성되어 청소년담당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를 담당한다.[20]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에는 특별 청소년법원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 여기

13) 「청소년법원법」(JGG) 제33조제1항, 제107조제1항
14) Jugendrichter
15) Jugendschöffengericht
16) Jugendkammer
17) 「청소년법원법」(JGG) 제33조제1항 및 제2항
18) 「청소년법원법」(JGG) 제33a조제1항
19) 「청소년법원법」(JGG) 제33a조제2항
20) 「청소년법원법」(JGG) 제33b조제1항

서는 항상 일반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이 합의부도 실체적 청소년형법과 형식적 청소년형법의 규정에 구속된다.[21]

나. 청소년법원의 관할

(1) 사물관할

청소년담당판사는 교육처분[22], 훈육처분[23], 「청소년법원법」에 따라 허용되는 부가형과 부수적 결과 또는 운전면허의 박탈이 예상되는 사안에 있어서 검사가 형사재판부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사물관할을 가진다.[24] 나아가 청소년전담판사는 청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의 적용이 예상되고 「법원조직법」 제25조에 따라 형사판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다.[25] 청소년담당판사는 1년 이상의 청소년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정신병원의 수용을 명할 수 없다.[26]

청소년참심재판부는 모든 청소년형사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즉 다른 청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행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27] 이에 따라 청소년참심재판부는 「청소년법원법」

21) 「청소년법원법」(JGG) 제102조, 제104조, 제112조
22) 「청소년법원법」(JGG) 제2편 제1장 제2절 제9조~제12조
23) 「청소년법원법」(JGG) 제2편 제1장 제3절 제13조~제16a조
24) 「청소년법원법」(JGG) 제39조제1항제1문, 제108조제1항
25) 「청소년법원법」(JGG) 제108조제2항
26) 「청소년법원법」(JGG) 제39조제2항
27) 「청소년법원법」(JGG) 제40조제1항제1문, 제108조제1항

에 따른 모든 제재를 선고할 수 있고, 청년의 비행과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병원 수용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이상의 자유형은 선고 할 수 없다.[28]

청소년합의부가 제1심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① 「법원조직법」[29]에 따라 참심재판의 관할에 속하는 청소년 비행(살인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② 사건의 규모가 커서 청소년참심재판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③ 형사대합의부가 관할했을 성인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④ 검찰이 증인으로 고려된 형사범죄 피해자에 관한 특별한 보호필요성으로 인해 청소년합의부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 ⑤ 5년 이상의 청소년형벌 또는 정신병원 수용이 예상되는 사건이다.[30] 그 밖에 청소년합의부는 상소법원으로서 하급 청소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판단할 경우 관할권을 가진다.[31] 원칙적으로 청소년합의부 중 청소년대합의부가 모든 경우에 결정권을 가지고, 청소년전담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소합의부가 결정한다.[32]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또는 다른 중요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절차와 성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병합될 수 있다.[33]

28) 「청소년법원법」(JGG) 제108조제3항제1문
29) 「법원조직법」(GVG) 제74e조, 제74조제2항, 제74d조
30) 「청소년법원법」(JGG) 제41조제1항
31) 「청소년법원법」(JGG) 제41조제2항
32) 「청소년법원법」(JGG) 제33b조제1항
33) 「청소년법원법」(JGG) 제103조제1항

(2)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우선「형사소송법」제7조 이하의 따라 범죄지, 거주지, 체포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른다. 나아가「청소년법원법」에 따라 3개의 재판관할지가 적용된다. 즉 ①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정법원에 의한 교육(훈육)사무를 담당하는 판사, ② 석방된 형사피의자가 공소제기 시점에 거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판사, ③ 피고인에 대해 청소년형벌이 아직 완전하게 집행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집행관리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34] 형사피의자이거나 피고인인 청소년을 위해 가정법원이나 후견법원의 교육임무가 수행되는 청소년사법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토지관할규정이다.

형집행절차에서의 토지관할은 1차적으로 청소년담당판사에게 있다.[35] 다른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청소년담당판사가 형집행절차를 수행한다.[36]

34)「청소년법원법」(JGG) 제42조제1항
35)「청소년법원법」(JGG) 제84조제1항 및 제3항
36)「청소년법원법」(JGG) 제84조제2항 및 제3항

3. 청소년형사절차 및 절차참여자

가. 청소년형사절차

(1) 수사 및 소송

① 수사절차에서의 조사

신고 또는 형사소추기관이 자체 수사를 통한 범죄혐의의 인지를 통해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추기관이 인지한 범죄혐의의 해명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성인에 대한 형사절차와 동일하지만, 청소년형사절차에서는 절차개시 이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형사피의자의 생활 및 가정환경, 성장과정과 지금까지의 태도 및 형사피고인의 심적, 정신적 그리고 성격적 특성을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조사되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학교 그리고 교사를 청문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청문으로 인해 교육 및 일자리 상실과 같은 원치 않는 불이익이 발생되어야만 하는 경우 학교 또는 교사의 청문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피고인의 성장상태 또는 행동과 관련된 본질적인 다른 특성의 확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37]

37) 「청소년법원법」(JGG) 제43조

② 형사소추 배제

검사는 ①「형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른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육적 조치가 이미 집행 또는 개시되었고 판사의 참여나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 ③ 형사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준수사항이나 부담명령이 부과되어 이행한 이후에는 형사소추를 배제할 수 있다.[38] 형사피의자를 통해 지득한 사실이 형사피의자의 교육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도록 검사는 공소장(「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에 중요한 조사결과를 작성해야 한다.[39]

③ 절차중지 결정

공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①「형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른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4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의해 판결에 의한 결정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교육적 조치가 이미 집행되거나 개시된 경우, ③ 판사가 판결에 의한 결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자백한 청소년에 대하여 준수사항이나 부담명령 부과 등의 교육적 조치를 명한 경우, ④ 형사피고인이 미성숙으로 인하여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절차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40] 절차중지를 결정할 때에 검사가 임시적 절차중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41]

38)「청소년법원법」(JGG) 제45조
39)「청소년법원법」(JGG) 제46조
40)「청소년법원법」(JGG) 제47조제1항
41)「청소년법원법」(JGG) 제47조제2항

④ 비공개 심리원칙

청소년형사절차에서 선고법원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절차 참여자 외에 피해자, 피해자의 교육부조인과 친권자, 형사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감독 또는 지도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거나 형사피고인을 위해 교육부조인이 임명된 경우 보호관찰관과 지도관찰관 및 교육부조인에게 출석이 허용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교육을 위한 구조조치가 수용시설 또는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시설 내에서 보장되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재판부 의장은 교육목적과 같은 특별한 이유를 근거로 다른 사람도 출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42] 공판에서 청년 또는 성인이 기소된 경우 공판은 공개한다. 청소년인 피고인의 교육적 측면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43]

⑤ 일시적인 절차참여 배제

형사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청소년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동의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될 수 있다.[44] 그 밖에도 「청소년법원법」은 교육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청소년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송절차 참여자를 소송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형사피고인을 심리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42) 「청소년법원법」(JGG) 제48조제1항 및 제2항
43) 「청소년법원법」(JGG) 제48조제3항
44) 「청소년법원법」(JGG) 제50조제1항

청소년재판부 의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재판부 의장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피고인에게 자신이 궐석 중에 심리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45] 형사피고인의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을 심리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이들이 형사피고인의 비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거나 그러한 가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출석으로 인해 사실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46]

⑥ 불복절차

청소년형사절차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형사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항소와 상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교육처분이나 훈육처분만을 명령한 결정이나 교육처분의 선택과 명령을 가정법원이나 후견법원에 위임한 결정에서는 선고된 법률효과의 종류, 범위와 관련해서 불복할 수 없다.[47]

(2) 집행

형사집행절차는 수사절차, 중간절차, 공판절차에 이은 형사소송의 마지막 단계이다. 「청소년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관리자는 청소년

45) 「청소년법원법」(JGG) 제51조제1항
46) 「청소년법원법」(JGG) 제51조제2항
47) 「청소년법원법」(JGG) 제55조제1항, 제109조제2항제1문

담당판사이며[48], 행형관리자는 집행지의 청소년담당판사이다.[49] 형집행(Vollstreckung)은 판결이 명한 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법적, 행정적 행위가 포함된다.[50] 형집행은 판결이 명한 내용을 관철할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면, 행형(Vollzug)은 판결을 어떻게 실행할지의 문제이다.

청소년구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청소년의 명예심을 일깨우고 설득력 있게 청소년이 자신이 행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청소년구금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51]

청소년구금은 주(州)법무행정청의 청소년구금치료시설 또는 휴일구금시설에서 집행된다.[52] 입소, 수용, 생활 및 여가시간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구금의 집행에 관한 시행령」(JAVollzO)[53]에 따른다. 구금의 집행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이는 장기구금은 물론 단기구금과 휴일구금 모두에 해당되며, 교육활동은 행형관리자와의 면담 외에도 사회적 개별부조, 그룹 활동, 수강 등을 포괄한다.[54] 장기구금의 경우 행형관리자는 각 청소년에

48) 「청소년법원법」(JGG) 제82조제1항
49) 「청소년법원법」(JGG) 제90조제2항제2문
50) 예를 들어 일정한 청소년구금시설이나 청소년형 교정시설로의 배정, 청소년에 대한 집행시설 입소명령, 집행연기의 승인, 휴일구금을 단기구금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잔여형기집행유예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
베른트-디터 마이어, 디터 뢰스너, 하인츠 쇠히 지음, 김성은, 박학모, 윤재왕 옮김, 『독일청소년형법(Jugendstrafrecht)』,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50쪽.
51) 「청소년법원법」(JGG) 제90조제1항
52) 「청소년법원법」(JGG) 제90조제2항제1문
53) 「청소년구금의 집행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Vollzug des Jugendarrestes, Jugendarrestvollzugsordnung: JAVollzO, 제정: 1966. 8. 12., 최종 개정: 2010. 12. 8. BGBl. I S. 1864) http://www.gesetze-im-internet.de/javollzo/JAVollzO.pdf
54) 「청소년구금의 집행에 관한 시행령」(JAVollzO) 제10조

대한 최종보고서(Schlußbericht)를 작성하는데, 가능한 한 청소년의 생활과 인격 및 구금의 집행이 가져온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휴일구금과 단기구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를 작성한다.[55]

(3) 기록부등록

청소년형사절차에서는 범죄기록도 특히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낙인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법원법」은 청소년범죄의 등록정보를 받을 권한의 제한, 삭제기간 단축, 법관의 판결을 통한 전과 삭제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의 법적용과 범죄소추 등에 쓰일 수 있는 정보의 관리는 별도로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일반 중앙등록부

「연방중앙기록부법」(BZRG)[56] 제4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법원법」 제27조에 따른 유죄판결만이 일반 중앙등록부에 등재된다. 교육처분과 준수사항의 부과 및 부수형은 「청소년법원법」 제27조에 따른 유죄판결과 연결되어 청소년형벌이나 처분을 더 확실시 하는 경우에만 등재된다.[57]

55) 「청소년구금의 집행에 관한 시행령」(JAVollzO) 제27조
56) 「연방중앙기록부법」(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Bundeszentralregistergesetz: BZRG, 제정: 1971. 3. 18., 최종 개정: 2017. 7. 18. BGBl. I S. 2732) http://www.gesetze-im-internet.de/bzrg/BZRG.pdf
57) 「연방중앙기록부법」(BZRG) 제5조제2항

②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Führungszeugnis)는 「연방중앙기록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만14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든지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일반 중앙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범죄가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예외의 폭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 즉 2년 이하의 청소년형벌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법원법」 제27조에 의한 유죄판결과 청소년형벌의 유죄판결은 전과기록이 제거된다고 선언될 경우 기록되지 않는다.[58]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 면제를 정하는 기간도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5년인 데 반해 1년 이하의 집행유예 없는 청소년형벌은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2년 이상의 청소년형벌의 경우에도 그 잔여 형기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이 면제되면 3년이 경과할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다.[59] 이렇게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 중앙등록부의 등재사항은 「연방중앙기록부법」 제41조제1항에 열거하고 있는 관청에만 통보가 되어 법원과 검찰의 법적용과 범죄소추 등에 쓰일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된다.

58) 「연방중앙기록부법」(BZRG)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59) 「연방중앙기록부법」(BZRG) 제34조제1항제1호

③ 기록소멸기간

「연방중앙기록부법」 제46조는 기록소멸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기록소멸기간이 통상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데 비하여 청소년의 경우는 짧게 규정하고 있다. 즉 1년 이하의 청소년형이나 2년 이하의 청소년형의 집행유예 및 판사의 전과기록제거 명령 후에는 5년의 소멸기간이 적용되고, 장기의 청소년형벌에 대해서는 소멸기간이 10년이다.

④ 판결을 통한 전과기록의 삭제

청소년형사절차에서 기록과 관련하여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판결을 통한 전과기록의 삭제에 관한 규정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성실하게 형기를 다 복역하고 모범적인 사람임이 입증되면 청소년담당판사의 판결로 전과의 삭제가 이루어진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전과를 삭제하는데 특히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의 집행 또는 면제 이후 2년이 경과해야 전과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60] 전과가 삭제된 것으로 선고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기록의 삭제 전에 중죄 또는 고의에 의한 경죄로 인해 새롭게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사는 판결로서 또는 사후적인 결정으로 전과 삭제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61]

60) 「청소년법원법」(JGG) 제97조
61) 「청소년법원법」(JGG) 제101조

⑤ 교육기록부

그 밖에 교육기록부(Erziehungsregister)에는「연방중앙기록부법」제60조에 따라 모든 교육처분과 훈육처분이 등재되고 가정법원의 친권 관련 결정,「청소년법원법」제3조에 따른 미성숙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62]과 제45조에 따른 형사소추의 배제 및 제47조에 따른 기소유예처분도 등재된다. 교육기록부에 등재된 사항은 오직 형사법원, 후견법원, 검찰과 청소년청에게만 전달될 수 있고, 경찰이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통보될 수 없다. 당사자는 교육기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63] 당사자가 만24세가 되면 이전에 자유형이나 청소년형벌 또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범죄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 교육기록부의 기록은 삭제된다.[64]

나. 청소년형사절차참여자

「청소년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형사절차참여자는 피의자, 교육권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청소년담당검사,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담당참심판사, 청소년법원부조인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청소년형사절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절차참여자로서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담당참심판사, 청소년법원부조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62)「청소년법원법」(JGG) 제3조는 청소년이 범행당시 불법성을 인지할 정도로 윤리적, 종교적으로 성숙한 경우에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63)「연방중앙기록부법」(BZRG) 제61조
64)「연방중앙기록부법」(BZRG) 제63조

(1)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사법제도에서 청소년담당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담당판사는 1심의 단독부에서 재판하고[65], 참심판사선출위원회의 의장이 되고[66], 청소년참심재판부의 의장이 되고[67], 청소년합의부의 의장이나 구성원이 된다.[68]

구법원과 지방법원 차원에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전문성과 교육적 능력을 갖춘[69] 청소년담당판사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청소년형사절차의 모든 업무에 걸쳐 이루어진다.[70] 청소년담당판사는 가정법원의 교육업무의 결정도 담당한다.[71]

① 간소화된 청소년절차에서 청소년담당판사의 역할

간소화된 청소년절차에서 청소년담당판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담당판사가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교육보호명령을 내리거나 훈육처분이나 운전금지를 선고하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간소화된 청소년절차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72] 청소년담당판사는 청소년

65) 「청소년법원법」(JGG) 제33조제2항
66) 「청소년법원법」(JGG) 제35조제4항
67) 「청소년법원법」(JGG) 제33a조제1항
68) 「청소년법원법」(JGG) 제33ba조제1항
69) 「청소년법원법」(JGG) 제37조: 청소년담당판사와 청소년담당검사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능력을 구비하고 청소년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70) 「청소년법원법」(JGG) 제34조제1항
71) 「청소년법원법」(JGG) 제34조제2항
72) 「청소년법원법」(JGG) 제76조

형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거나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신청을 거부하고 검사는 공소장을 제출하며 정규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73] 청소년담당판사는 간소화된 청소년절차에서 구술변론을 기초로 판결에 의해 결정하고, 검사는 심리에 참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74]

② 형집행단계와 행형단계에서 청소년담당판사의 역할

형집행단계와 행형단계에서 청소년담당판사는 형집행관리자이자[75] 행형관리자이기도 하다.[76] 즉 「청소년법원법」 제82조에 따르면 청소년담당판사는 성인에 대한 일반형사절차에서는 검사에게 부여되는 사법행정적 임무[77]는 물론 형사소송법이 형사집행부에 부여한 임무[78]도 수행하는 형집행관리자이다. 행정적인 활동으로 예를 들면 일정한 청소년구금시설이나 청소년형벌 교정시설의 배정, 청소년에 대한 집행시설에의 출두명령, 집행연기의 승인 등이 속한다. 형사집행 차원에서의 청소년담당판사의 결정에는 예를 들어 보안처분 집행의 조건부 중지나 잔여형기 집행유예의 취소, 청소년형벌의 잔여형기의 집행유예와 그와 관련된 집행유예기간[79], 준수사항, 부담명령 등에 관한 결정[80], 휴일구금의 단기

73) 「청소년법원법」(JGG) 제77조
74) 「청소년법원법」(JGG) 제78조
75) 「청소년법원법」(JGG) 제82조
76) 「청소년법원법」(JGG) 제90조제2항제2문
77) 「형사소송법」(StPO) 제451조
78) 「형사소송법」(StPO) 제462a조
79) 「청소년법원법」(JGG) 제83조
80) 「청소년법원법」(JGG) 제88조

구금으로의 전환[81]과 교육적인 이유에서 청소년구금 집행의 중지[82] 등이 있다.

③ 청소년담당판사의 증거 조사 및 청문 의무

청소년담당판사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관계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형집행관리자로서 청소년담당판사는 청소년형의 잔여 형기의 집행유예와 청소년구금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절차참여자인 선고재판부, 검찰, 청소년법원부조인,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 등을 청문하여야 한다.[83]

(2) 청소년담당참심판사

청소년법원의 구성에서 청소년담당"참심판사"(Schöffen Richter)는 직업법관이 아니고 일반시민 중에서 선출되는 명예법관(Ehrenamtlicher Richter)이다. 청소년담당참심판사는 청소년법원부조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법원조직법」(GVG)[84] 제40조[85]에 규정된 위원회에 의해 남녀동수로

81) 「청소년법원법」(JGG) 제86조
82) 「청소년법원법」(JGG) 제87조제3항
83) 「청소년법원법」(JGG) 제87조제3항, 제88조제4항,
84)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정: 1950. 9. 12. 최종 개정: 2017. 10. 8. BGBl. I S. 3546) http://www.gesetze-im-internet.de/gvg/GVG.pdf
85) 지방법원은 5년마다 위원회를 구성함. 위원회는 의장인 지방법원판사, 주(州)정부에서 지정한 행정공무원 1인과 7인의 신임인(Vertauensperson)으로 구성됨. 신임인은 해당 하위 행정구역 대표단의 최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법원 관할 구역 주민 중에서 선발됨. 위원회는 의장, 행정공무원, 신임인 3인 이상이 출석할 경우 의결이 가능함.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86] 청소년법원부조위원회는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제청해야 하며 청소년담당참심판사로서 활동할 인원의 최소 2배수를 선출해야 한다.

청소년담당참심판사로 선출된 자들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능력을 구비하고 청소년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87] 제청명단은 청소년청(Jugendamt) 내에서 1주일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열람공고 시점은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88] 청소년담당참심판사는 특히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되는 참심판사명단에 등록된다.[89]

독일에서 참심판사는 명예직이며, 모든 독일 국민은 그 임용을 받아들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 형사사법에 명예직 법관이 참여하는 것은 1848년 독일혁명의 민주주의운동의 산물로서,[90] 민주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역사적인 도입 근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규문절차를 가졌던 경찰국가와 절대주의시대에 직업법관으로부터 형벌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행사한다는 데 있다.

오늘날 참심판사제도의 의의는 사법의 민주화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통한 재판의 합리성 제고에 있다. 참심판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86) 「청소년법원법」(JGG) 제35조제1항
87) 「청소년법원법」(JGG) 제35조제2항
88) 「청소년법원법」(JGG) 제35조제3항
89) 「청소년법원법」(JGG) 제35조제5항
90) 주석서 Trenczek · Goldberg, Jugendkriminaliät, Jugendhilfe und Strafjustiz, Boorberg, 2016., 335쪽 참조.

는 「법원조직법」(GVG) 제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91]

(3) 청소년법원부조인

청소년법원부조인[92]은 청소년형사절차에만 있는 소송기관이다. 청소년법원부조 제도는 청소년부조협회와 협력하여 청소년청에 의해 이루어진다.[93]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법원의 절차에서 전문인력으로서 교육적 · 사회적 · 복지적 관점이 적용되도록 하고 제재를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94] 청소년형사절차에서 청소년법원부조인은 형사소추기관도 아니며 피의자보좌만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며 증인과 같은 단순한 증거방법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일차적으로 조사권한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소송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95] 「청소년법원법」 제38조와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부조」 제52조에 따른 청소년법원부조인의 조사업무, 감독업무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 업무를 살펴본다.

91) 참심판사제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는: 릴리에 한스 저, 하태영 역,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6., 341~354쪽; 김도협, 독일 명예법관제도에 관한 일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 8., 481~495쪽 참조.

92) Jugendgerichtshilfe의 번역어는 소년법원보조, 소넌사법보조, 소년사법보호 등 다양함. 이 글에서는 청소년법원법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청소년법원부조인”으로 씀.

93) 「청소년법원법」(JGG) 제38조제1항

94) 「청소년법원법」(JGG) 제38조제2항

95) 정희철,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보호관찰 제14권 제2호, 2014. 12., 83~107쪽.

① 조사업무

청소년형사절차의 시작 단계에서 청소년법원부조인이 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형사피의자인 청소년의 인격, 성장과정과 환경에 관한 조사이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 피의자의 생활사정 및 가족상황을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96]

구속사건에서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청소년법원부조인은 보호관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집행기간 동안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한다.[97] 청소년법원부조인이 재판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변호인처럼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안 되고, 청소년의 현재 인격상을 그대로 반영한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98] 청소년법원부조인은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교육적·보호적 보조인으로서 청소년의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갈등의 어려움이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다.[99] 이에 대하여 청소년법원부조인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이중적 임무에 대해 알려주고, 청소년

96) 「청소년법원법」(JGG) 제43조제1항
97) 「청소년법원법」(JGG) 제38조제2항
98) 홍영오·황태정,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84~285쪽.
99) 한편으로는 통제와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와 후견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법원부조인의 역할충돌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관찰제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제기와 유사한 점을 보임. 조흥식,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 : 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2011. 12., 7~34쪽.

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갈등상황을 완화시킬 것을 권고하는 견해가 독일 내에서는 지배적이다.

청소년사법절차에서 경찰인력이 아닌 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청소년법원부조인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제재와 교육의 조화를 지향하는 청소년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제도적 장치이다.[100]

② 감독업무

청소년부조인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즉 청소년이 준수사항과 부담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역할을 담당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를 판사에게 보고한다.[101] 보호관찰기간 동안 청소년법원부조인은 보호관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고, 형을 집행하는 기간 동안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02]

청소년법원부조는 청소년에 대한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절차의 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준수사항이 부과되기 전에 청소년법원부조인을 청문하여야 하고, 지도지시가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지도관찰관으로서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103]

---

100) 베른트-디터 마이어, 디터 뢰스너, 하인츠 쇠히 지음, 김성은, 박학모, 윤재왕 옮김, 『독일청소년형법(Jugendstrafrecht)』,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41쪽.
101) 「청소년법원법」(JGG) 제38조제2항제5문~제7문
102) 「청소년법원법」(JGG) 제38조제2항제8문~제9문
103) 「청소년법원법」(JGG) 제38조제3항

③ 교육적 원호와 후견업무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부조」[104]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후견, 원호 및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의 공공근로, 다이버전, 가해자-피해자-조정, 청소년사회봉사, 교육상담, 사회그룹활동, 교육조력인 및 상담조력인, 사회교육적 가족지원, 복지시설 등 후견적 주거형태에서의 교육, 사회교육적 집중개별보호, 적응보조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청소년법원법」 제45조제2항제2문에 따른 자발적 가해자-피해자-조정(TAO)[105]은 불기소처분이라는 특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46a조[106]가 유추적용 되고, 실무에서도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제적인 의미가 커지고 있다.[107]

---

104)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보호」(Sozialgesetzbuch Achtes Buch: SGB 8-Kinder- und Jugendhilfe, 제정: 1990. 6. 26., 최종 개정: 2017. 7. 20. BGBl. I S. 2780)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SGB_8.pdf

105) Täter-Opfer-Ausgleich

106) 「형법」(StGB) 제46a조
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형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가해자-피해자-조정)을 통해 그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했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2. 손해의 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포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107) 독일의 회복적 사법실무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Dieter Dölling 외 13인 지음, 이진국 옮김, 가해자-피해자-조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박광섭·김성돈,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운용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9쪽 이하; 김성룡,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제도 10년 결산의 시사점,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10., 355~377쪽;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10. 4., 41~69쪽.; 이승헌,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2쪽 이하 등 참조.

④ 기타 권한

그 밖에도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통보 받을 권한과 청소년 접견권,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한 등을 가진다. 우선 통보 받을 권한에 대해서는,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의 구속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보 받아야 한다.[108] 청소년의 일시적 체포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판사에게 인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법원부조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109] 그리고 접견권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구속 상태에 있을 때에는 청소년법원부조인에게 변호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형사피의자와의 접견이 허용된다.[110] 공판절차에서 청소년법원부조인은 발언권을 가진다.[111]

108) 「청소년법원법」(JGG) 제70조
109) 「청소년법원법」(JGG) 제72a조
110) 「청소년법원법」(JGG) 제72b조
111) 「청소년법원법」(JGG) 제50조

4. 시사점

우리나라는 독립된 청소년법원을 두고 있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을 소년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데 반해, 독일은 일반형사절차와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소년사건절차로 통합하여 청소년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법원은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참심재판부, 청소년합의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원의 구성도 다원화 하고 있으며, 청소년담당판사와 청소년담당검사 외에도 청소년담당참심판사가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담당참심판사는 남녀 동수로 참여하도록 「청소년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범죄기록에 관해서도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낙인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소추 당국의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앙등록부의 등재사항과 범죄경력증명서의 기록 내용을 차별화하고 기록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성실하게 형기를 다 복역하고 모범적인 사람임이 입증되면 청소년담당판사의 판결을 통해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 삭제 전에 새롭게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과의 삭제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독일 청소년사법제도에서 청소년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직권주의가 채택되어 있지만, 청소년법원부조인이

공판에 출석하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심판이 진행되는 점이 일반 형사 소송절차와 크게 다르다.

또한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관할법원과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점, 그리고 절차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절차에서의 협력과정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교육형법으로서의 청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청소년법원법」에서 체계화 하고 있는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에서 절차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담당판사와 청소년담당판사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능력을 구비하고 청소년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담당판사에게 청소년형사절차에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재판부는 청소년담당판사 외에 청소년담당참심판사가 남녀 동수로 참여하여 구성된다. 참심판사는 직업법관이 아닌 명예법관으로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참심판사제도는 사법의 민주화와 전문분야에 대한 재판의 합리성 제고에 이바지 한다.

셋째, 청소년법원부조인은 청소년형사절차에만 있는 소송기관으로서 청소년법원의 절차에서 전문 인력으로서 교육적·사회적·복지적 관점이 적용되도록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청소년형사절차의 시작 단계에서 청소년의 인격, 성장과정과 환경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집행기간 동안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한다. 청소년사법절차에서 경찰인력이 아닌 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청소년법원부조인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제재와 교육의 조화를 지향하는 청소년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제도적 장치이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2013】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2014】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23 카페리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25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27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28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9)
29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2014. 9)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2014. 11)
3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12)
3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2014. 12)
33 그라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4. 12)

【2015】

3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
35 일본 국선변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 2)
36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2)
37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3)
38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2015. 3)
39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4)
40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5)
41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5. 5)
42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6)
43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2015. 8)
44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9)
45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9)
46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47 성범죄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5. 11)
48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2015. 12)

【2016】

49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6. 2)
5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2016. 2)
51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일본 입법례 (2016. 3)
52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2016. 5)
53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2016. 6)
5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배구조와 평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6. 6)
55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2016. 7)
5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2016. 10)
57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2016. 12)
58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2016. 12)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59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2016. 12)
60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2016. 12)

【2017】

61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2017. 1)
6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2017. 3)
63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2017. 3)
64 공정거래 I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2017. 7)
65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2017. 8)
66 공정거래 II - 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2017. 8)
6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 입법례 (2017. 9)
68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2017. 10)
69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 (2017. 10)
70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 (2017. 11)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1호

발 행 인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7년 11월 27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31-9720109-001325-14

〈비매품〉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09-001325-14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